
「21년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안내서

202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 추진 내용	3
3. 평가 절차	9
4. 과제신청 및 접수	13
5. 문의처	14
6. 사업관리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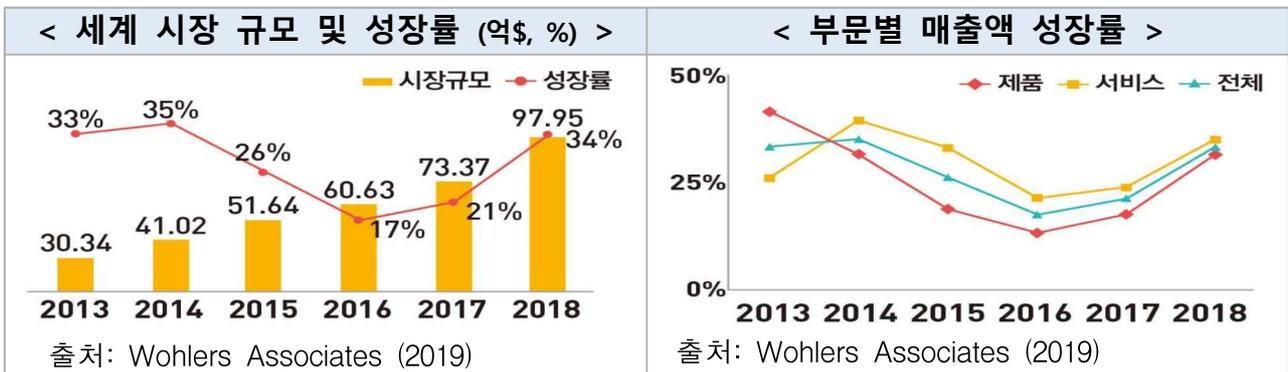
1 사업개요

가. 목적

- 제조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최고 수준의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나. 배경 및 필요성

- (현황) 글로벌 동향으로 3D프린팅 산업은 산업의 최종재 생산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확대로 진행중이며, 향후 고부가가치 시장 중심의 견고한 성장세 전망



- (문제점) 자동차, 항공 등 고부가 제조기업의 3D프린팅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공급-수요기업 모두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

- * 3D프린팅 수요기업 도입 제약요인 : 전문인력부족 47.9%(20년 3DP 산업실태조사('21.3월))
- * 3D프린팅 산업활성화 위한 정책수요 사항 : 전문인력양성 34.8%(20년 3DP 산업실태조사('21.3월))

다. 사업내용

- 3D프린팅 중급-고급 수준의 커리큘럼기반 교육 및 산업 현장 애로 사항 해결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

라. 사업 예산 : 6.5억원 (과제-1 3억원, 과제-2 3.5억원)

마. 관련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17.2), 3D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20.6.)

참고

마포 3D-FAB 전문교육실 및 온라인교육실 현황

가. 공간시설

o 위치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 7층 마포 3D-FAB 전문교육실

o 기반시설

- 이론 및 실습이 가능한 복합교육공간(약 32평)
 - . 수용인원 30명 책상(20명-10명 분리가능)
- 온라인교육실(약10평)



<7층 전문교육실 입구>



<실습공간>



<교육실-1(20명)>



<교육실-2(10명)>



<6층 온라인교육실 외부>



<6층 온라인교육실-내부>

나. 교육기자재

3D 프린터		FDM 6대 SLS 1대
교육용 PC		데스크탑 20식 노트북 10식
모델링 SW		(교육용) 캐디안 30ea (교육용) 퓨전360 30ea

2 사업 추진 내용

가. 개요

- 사업명 : 21년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
- 협약기간 : 2021.6.1.(예정) ~ 2021.12.31
- 지원규모 : 총 6.5억원(과제-1 : 3억원, 과제-2 : 3.5억원)
- 선정대상 : 3D프린팅 전문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 및 협·단체

구 분	과제-1	과제-2
과제명	21년 3D-FAB 전문인력 양성교육 (커리큘럼)	21년 3D-FAB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젝트)
선정대상	공모를 통한 전담기관 선정 (전담) 교육기관 * 참여기관으로 공동수급 허용	공모를 통한 전담기관 선정 (전담) 기관 및 협·단체 (참여) 교육기관 * 참여기관으로 공동수급 허용
사업기간	협약일 ~ 2021년 12월 31일	
지원조건	국비 100%	
지원예산	300,000,000원	350,000,000원
사업내용	커리큘럼 기반 3D프린팅 교육 (220명) * 주요 추진내용 참조	프로젝트(6개) 기반 3D프린팅 교육 (30명) * 주요 추진내용 참조

* 과제-2는 수요조사, 홍보·모집, 사업운영, 성과관리 등이 가능한 협·단체가 주관기관으로, 교육기관이 참여기관 형태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어야 함

* 교육기관은 과제-1, 과제-2에 지원가능, 모든 과제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타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정부 지원사업 관련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으로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자
 - 수행기관 중 누구라도 아래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제외 처리(신청기관은 반드시 자체 확인할 것)

<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7. 주관기관의 설립연월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사업자등록증 기준) 미만

나. 세부 추진 내용

과제-1 커리큘럼 기반 전문인력 양성교육

- (교육대상) 3D프린팅과 관련된 예비창업자, 구직자, 재직자 대상(220명 이상)
- (교육과정) 3D프린팅 중급이상 전문가 수준의 전문·특화 교육



* 공정별-수준별 교육항목은 대표적인 예시임

< 교육과정 구성(안) >

단계	과정		수준	대상	교육방식
전문	커리큘럼	디자인~후가공 * 5일x4회x15명=60명	3DP자격증 취득 산3DP 운영 가능	예비창업자, 재직자 등	- 모델링-출력-후처리 - 산업용 3D프린터 중심
		디자인~후가공 * 10일x4회x12명=48명	플라스틱3DP 운영 메탈3DP 운영	예비창업자, 재직자 등	- 모델링 및 출력 관련 - 안전·환경·소재(물성) 관련 - 열관리·후처리·시험인증 관련
	전문SW교육 * 5일x6회x15명=90명		3DP전문SW운영	예비창업자, 재직자 등	- 설계-역설계 관련 - 전처리-출력 관련 - DfAM 관련
특화	산업현장적용 * 15일x2회x8명=16명		즉각적인 산업현장 투입 가능 수준 산업용3DP 운영 가능	재직자 등	- 산업별 소재-장비 - 산업별 전용SW 등 - 산업용3D프린터 (플라스틱, 메탈) 중심
	산업현장적용 * 20일x2회x8명=16명				

○ (교육운영) 3D프린팅 전문 및 특화 교육과정 구성운영과 모든 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개발 및 운영진행

- 교육생은 모집인원의 선별과정을 거쳐 선발하여 교육진행
 - * 실습교육은 3D-FAB교육장에서 진행(출력은 외부 가능)
- 전문교육은 중급이상 3D프린팅 공정.수준 단계별 커리큘럼 진행
 - * 5일/회 x 10회이상(총 150명 이상), 10일/회 x 4회이상(총 48명 이상)
 - * 메탈교육은 기반환경-출력(파라미터, 열관리)-후처리-후가공 위주로 교육
- 특화교육은 고급이상 산업-소재-출력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
 - * 특화교육은 의료·기계부품·열교환 등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진행
 - * 15일/회 x 2회이상(총 16명 이상), 20일/회 x 2회이상(총 16명 이상)
- 교육은 온.오프라인 교육(5:5수준)을 병행하며, 야간.주말 과정도 가능

과제-2 프로젝트 기반 전문인력 양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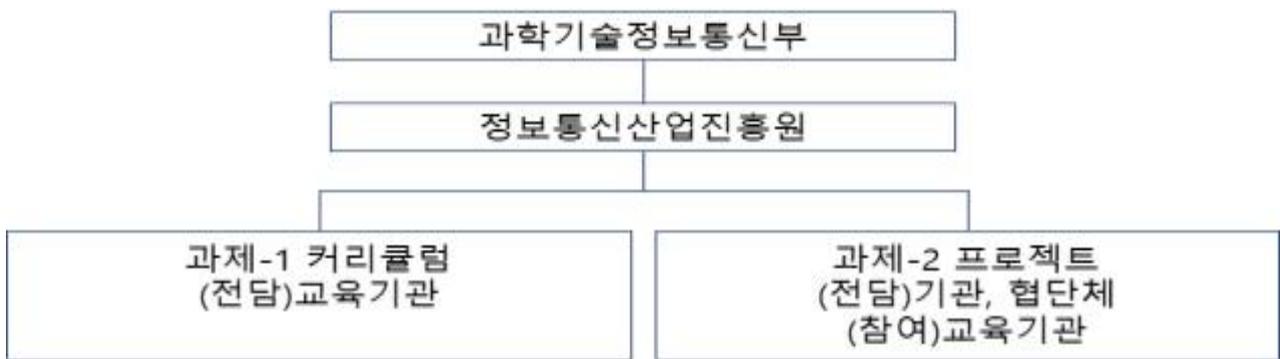
- (추진과정) 사업공모를 통합 교육사업자 선정후 과제공모(분야별)-과제선정(6개과제)-맞춤교육 진행



- (교육대상) 3D프린팅 적용가능 기업재직자 대상(30명 이상)
- (교육과정) 3D프린팅 기술로 제조분야별 부품·제품의 공정 적용 문제 해결과 산업현장 재직자 대상 프로젝트형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 3D프린팅 장비·소재·SW별 전문가 팀과 수요기업이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제조 애로사항·문제 해결 및 현장 맞춤형 교육 진행
 - 맞춤형 부품·제품·제작몰드 등 제작시 필요한 3D프린팅 기술(3D 데이터 취득-모델링-출력-후처리)의 밀착형 교육지원
- (교육운영) 선정과제 기업의 재직자(4~8명) 대상 3D프린팅 기술적용 컨설팅 및 밀착교육 진행(30명 이상)
 - 교육사업자는 과제공모-선정-프로젝트(컨설팅-교육-실증)를 진행
 - * 과제는 소재별 메탈(3개), 플라스틱(2개), 기타(1개)
 - ** 산업분야는 접수된 과제 비율에 따라 배분

- 해당 프로젝트 진행시, 과제기업 현장에 필요한 3D프린팅 교육 실시
- 컨설팅 그룹은 전문교육팀과 컨설팅지원팀(3~5명/과제)으로 구성
- 사업진행시 필요한, 장소 및 자재 등은 교육수행사에서 일체 제공
- 그간의 전문인력 교육의 성과 조사.분석 및 교육생의 취업연계 등을 위한 리쿠르팅 행사 등 추진

다. 사업 추진체계



구분	주요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 점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교육 운영기관 선정, 평가, 정산 등 사업관리 및 성과 확산
교육운영 컨소시엄	- 산업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라. 추진일정

단계	내용	일정
접수·선정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 (공고일) '21.4.19(월)(접수기한 : '21.5.18(화)) ○ (선정평가) 평가일시/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수행	협약체결 중간보고	○ (협약체결) '21.5월 ○ (중간보고서 제출) '21.9월
완료	최종보고 최종평가 성과보고	○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21.1.15 ○ (최종평가) 평가일시/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성과보고) 과제 종료 이후 3년간(연1회)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일반 사항

- 주관/참여기관이 교육과정 운영·개발에 소요되는 전산장비 및 실습 기자재는 현물 계상 가능하며 이 경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사업비 지원 가능

바. 관련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5호, 2021.02.17.) 준용
- 본 사업은 안내서, 협약서, 사업 관리요령에 의해 수행 및 관리되며, 이에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등을 따름

사. 제재 사항

- 사업비를 협약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시용 시,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과제의 불성실중단 평가결과 등의 사유 발생 시 등에 대해 귀책정도에 따른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 선정절차 : 사전검토 → (필요 시)서류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나. 선정기준

- 선정과제 수 : 총 2개 과제(과제구분별 1개)
- * 선정기준 : 선정평가 결과 고득점 과제 순으로 선정

다. 단계별 선정방법

① 사전검토

- (개요)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검토대상) 기한 내 접수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서, 첨부·제출 서류 등 검토
- (주요 검토항목) 접수내역, 신청자격,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및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검토

구분	검토항목
접수	○ 전산접수 완료 후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적정성
관련 규정	○ 지원대상 해당 여부 (* 기 지원분야 동일 서비스모델 및 유사·중복과제 제외 등)
	○ 타 정부사업 기술료 및 정산환수금 완납 여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참여 제한 여부 (기업/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의 참여제한 등)
	○ 기타 규정이나 공고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사전제외
- * 부적격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등 일부 부적격 사항 적발시에도 사전제외 처리
- * 단, 부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적격여부 최종판정

② 서류평가 ※ 서류평가는 생략가능

- (개요)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평가' 대상과제 선정
- (평가대상) 사전검토 통과 과제

※ 접수된 제안 과제수를 고려하여 서류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의 평가기준 및 통과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함

-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 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평가등급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평가점수	50 미만	50.0~59.9	60.0~79.9	80.0~89.9	90 이상

-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이상인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과제로 선정
 - * 동점 발생 시 「①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기술우수성” 점수로 비교 ③“추진체계 적정성” 점수로 비교 ④“사업타당성” 점수로 비교」 순으로 판정

③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우선 협약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
- (평가대상) 서류평가 통과 과제
- (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총괄 책임자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NIPA 평가관리 팀 주관)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 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평가등급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평가점수	50 미만	50.0~59.9	60.0~79.9	80.0~89.9	90 이상

- (평가결과) 평가점수 '보통'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
 - * 동점 발생 시 「①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기술우수성” 점수로 비교 ③“추진체계 적정성” 점수로 비교 ④“사업타당성” 점수로 비교」 순으로 판정

④ 협약서류 검토(주관 : NIPA 사업담당자)

- (개요) 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 검토

- (검토대상) 우선 협약대상 과제(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진행)
 - * 우선 협약대상의 협약포기 또는 협약대상 자격 박탈 시, 발표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로 협약서류 검토 추진

..... < 우선 협약대상자 자격취소 기준 >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과제선정 이후 협약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1. 신청기관이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2.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지연 또는 과제 종료시한 이내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3.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검토방법) 사업담당자가 “사업안내서, 관련 규정, 평가의견”을 기준으로, 과제의 사업범위·내용·사업비 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 * 본 협약의 서류검토 기간 중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세부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NIPA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협약관련 제반 사항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 (검토결과) 부적격 사항에 대한 협약서류 수정·보완 및 최종 협약 대상 확정
 - * 조정대상 내용의 성격과 규모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심의위원회(외부 3인) 개최 가능

⑤ 협약체결(주관 : NIPA 사업담당자)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과제를 대상으로 전자협약 추진
 -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라.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정책 부합성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이해도 ○ 과제 목적 및 필요성 ○ 사업의 범위 	10
	산업분석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현황, 환경분석, 문제점 및 당면과제(문제점) 도출 여부 ○ 해당 산업분야의 기업 요구 분석 및 반영 여부 	10
	사업목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목표의 적절성 ○ 사업 방향 및 전략의 적절성 	10
사업 수행 능력 (30)	교육개발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프린팅 전문-특화과정 개발 적절성 ○ 교육대상별/교육과정별 목표에 부합하는 교수설계 및 커리큘럼 구성의 적절성 ○ 전문성 있는 강사 수급 및 교수방안의 적절성 	15
	교육운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운영 방식의 적절성 ○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의 적절성 ○ 온/오프라인 교육의 효율적 운영계획의 적절성 ○ 교육대상자 모집·선발 및 이수율(수료율) 제고 방안 	15
사업 관리 (30)	조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기관(주관, 참여기관)의 역할 및 수행 적절성 ○ 사업책임자, 참여인력 업무 분장의 적절성 ○ 목표달성 및 과제 완수를 위한 조직의 지원 의지 및 자원 할당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참여 및 목표 달성도 	15
	품질 및 일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내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의 적절성 ○ 성과지표 적절성 및 지표달성 계획 및 관리의 적절성 ○ 단계별 산출물,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의 적절성 	10
	성과확산 및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으로 예상되는 산업 파급효과 및 산업발전 성과 확산 정도 ○ 해당 산업군 3D프린팅 전환 기여도 ○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정도 	5
사업비 구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 예산집행 세부계획 적절성 및 투명성 	10
총점			100

4 과제신청 및 접수

가.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 본 사업안내서의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30일) : 2021.04.19(월) ~ 05.18(화), 15:00 까지
 -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MART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 ※ 마감일 15:00까지 제출완료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 미제출과제 접수 불가
 - ※ 전산접수내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
 - ※ 전산 접수는 마감시한일 15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스마트시스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행정지원
→ “SMART 사업성과관리시스템” 선택
 - 혹은 사업성과관리시스템(<https://smart.nipa.kr>) 직접 접속
 - ※ 세부내용 “SMART_전산접수_메뉴얼.pdf” 파일 참조

다.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과제수행계획서)
 -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양식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 첨부파일을 작성
- 2021년 과제수행계획서 및 붙임 각 1부

< 신청서류 리스트 >

구분		필수여부	제출양식	비고
2021년 과제수행계획서		○	PDF	· 표지 서명 및 날인 · HWP 제출시 첨부파일에 압축하여 제출
붙임 1	신청자격 등자가점검표	○	PDF	· 수행/참여 기관 서명 및 날인
붙임 2	기관(기관장)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PDF	· 수행/참여 기관 날인
붙임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PDF	· 참여인력 전원 서명
붙임 4	평가항목참조표	○	PDF	
붙임 5	참여기관참여의사확인서	해당시 필수	PDF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수행/참여 기관 서명 및 날인
붙임 6	직접고용계획및효과표	○	XLSX	· 참여인력에 전원에 대해 작성
붙임 7	사업자등록증	○	JPG/PDF	· 수행/참여 기관 각각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이용 · 최신 발행본(3개월 이내)
붙임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PDF	· 관련기관 양식
붙임 9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PDF	· 최근3년간

- ※ 필수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시 사전지원제외 조치
-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제출
- ※ 협약시 보증보험증권,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청렴이행각서 등 추가 제출
 -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결산기준)는 필수 제출서류이나, 비영리기관은 제출 면제
- ※ 협약체결 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탈락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5 문의처

- 사업관련
 - 과기정통부 위재승 사무관(wijs@korea.kr)
 - NIPA 디지털제조혁신팀 황순철 수석 (043-931-5485, hwangsc@nipa.kr)
- 접수관련
 - 전산등록(스마트시스템) 관련 문의 (070-5151-8239, smart@nipa.kr)

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최종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협약사업비는 주관기관에 분할 지급 예정
- 주관/참여 각 기관은 협약체결 전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통장)을 개설하고, 사업비 계좌의 사업비관리시스템 사전등록과 사업비카드 발급신청해야 함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수행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사업비는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유지하여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업비 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확인서를 포함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비의 정산 및 반납

- 사업비는 사업종료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정산하여 반납처리함

다. 성과물의 귀속

- 지식재산권의 소유
 - 과제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단독 소유.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거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음

○ 발생품의 귀속

- 과제 수행결과로서 발생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유형적 발생품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이 소유. 다만,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